

제정 2014.08.01.

개정 2025.11.17.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서울남산국악당 운영사인 (주)컬처브릿지 (이하 “운영사”라 한다.)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서울남산국악당(이하 “국악당”이라 한다.)의 기본시설인 국악당과 부대시설의 대여 및 부대설비 사용(이하 “대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의 정의)

- ① 대관이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국악당의 시설과 설비, 부수 장비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운영사는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 (대관의 종류)

-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 가. 정기대관은 다음 연도 공연 일정에 대하여 매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대관으로, 운영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 승인,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통해 시행한다.
 - 나.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확정 이후 공연 취소 등의 사유로 잔여 일정이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대관을 말한다.
- ② 대관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준비대관, 철수대관 및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
 - 가. 공연대관은 입장권 발권을 수반하는 공연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연장을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준비대관은 공연대관 이전에 무대 세트 또는 장비 설치, 리허설등 공연의 준비를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철수대관은 최종회차 공연이 종료된 이후 무대 세트 또는 장비 등의 철수를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라. 기타 대관은 공연 목적 이외에 연습, 녹음, 녹화,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국악당의 기본

시설 및 부대시설, 부대설비 등을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대관범위) 운영사가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기본시설 : 공연장, 분장실, 로비
- ② 부대시설 : 연습실, 소리마루(체험실), 야외마당, 전시실

제5조 (대관시간)

- ① 대관 시간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교육, 행사 시간과 준비 및 철수 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 ② 이틀 이상 대관한 경우, 공연 준비 또는 공연 횟수와 관계없이 대관 기간 내 대관 가능한 시간을 모두 점유, 대관한 것으로 본다.
- ③ 국악당 대관 시간은 1회 4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오전은 3시간으로 한다.
 - 1. 오전 (09:00~12:00) - 3시간
 - 2. 오후 (13:00~17:00) - 4시간
 - 3. 저녁 (18:00~22:00) - 4시간(12:00~13:00), (17:00~18:00)의 경우 극장 휴식 시간으로 대관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공연시간과 중복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제6조 (대관신청)

- ① 국악당 시설의 대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서식 제1호) 및 ‘공연(행사)계획서’(서식 제2호),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사본을 국악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기대관 신청은 연 2회 이내로 하고, 신청기간은 매년 국악당이 별도로 정하며, 당해연도 잔여일정 발생 시 수시 대관을 시행할 수 있다. 단, 국악당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상시 대관 신청이 가능하다. 부대시설의 경우 상시 대관 신청이 가능하다.

제7조 (대관심사 및 승인)

- ① 운영사는 대관 신청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그 결과를 대관승인서 혹은 대관 불가 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수시대관 및 부대시설 대관의 경우 유선 통보

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대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시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심사위원 인력풀에서 국악당이 위촉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 ⑤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은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상시 대관은 자체대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⑥ 운영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 기간 및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제8조 (대관자의 정의) ‘대관자’라 함은 본 내규를 인정하고 ‘운영사’로부터 대관 승인을 받아 ‘운영사’와 대관 계약을 체결한 신청인을 말한다.

제9조 (대관료)

- ① 대관료는 대관 내규에 첨부된 대관료 <별표1>에 따라 부과하며,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표2>에 따라 부과한다.
- ② 대관자는 대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을 내야 한다.
- ③ 정기대관자는 지정된 계좌로 대관료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내고, 대관료 잔금의 납부 기한은 대관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 ④ 수시대관자는 지정된 계좌로 대관료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내고, 대관료 잔금의 납부 기한은 대관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 ⑤ 대관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후 대관료의 전액을 내야 한다.
- ⑥ 부대설비 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 정산하며, 운영사는 공연 종료 후 10일 이내 부대설비 사용 내역서와 계산서를 대관자에게 발행하고, 대관자는 계산서 발행일 기준 10일 이내에 부대설비 사용료를 내야 한다.
- ⑦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단, 10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대관료 면제, 감면, 반환)

- ① 운영사는 다음 경우에 대해 심사 후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가. 국악당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나. 공동 주최공연, 기획공연, 초청공연, 후원공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다. 정부 기관 또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공연(행사)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라. 국악당에 대한 취재 및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마. 전문 국악 연주자(단체)가 공연이 아닌 녹음, 녹화, 교육, 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바.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공연 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 ②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 또는 수익성이 높은 대관의 경우 수익금 분할 방식 등으로 대관료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협약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 ③ 운영사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적 재난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할 수 없게 된 경우(전액)
 - 나. 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할 수 없는 경우(전액)
 - 다.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대관자가 대관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을 하여 운영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기납부액)

제11조 (대관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 (대관신청 제한, 승인제한 및 취소, 신청자격 중지)

- ① 운영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 가.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인 경우
 - 나. 국악당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시설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특정 종교의 또는 정치적인 목적인 경우
 - 라. 상품 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마. 본 내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사는 대관 승인을 제한하거나, 대관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 가. 대관 승인 후 신청서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나. 본 내규 제12조 1항의 내용이 확인되었을 때

- 다.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대관료를 내지 않을 때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운영사는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대관 취소 및 2년 이하의 대관 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가. 최근 1년 이내에 제1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나. 본 내규에 따른 손해 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본 내규를 위반할 때

제13조 (공연내용, 일정 변경 및 대관 취소)

- ① 모든 공연내용(공연명, 연주자, 공연내용, 주최자 등)은 승인된 내용대로 진행해야 한다. 단, 대관자의 사정으로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운영사는 변경 내용이 대관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대관자의 사정에 의한 대관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운영사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일정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는 ‘대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운영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대관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④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때 대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공연 일정 변경 또는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낸 대관료는 제10조 3항에 의하여 처리된다.

제14조 (시설사용 및 설비변경)

- ①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로비 및 무대에 공연과 관련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 ② 대관자는 국악당의 시설 및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운영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대관자는 국악당 시설 및 설비를 사용 즉시 원상 복귀하고 반입 또는 설치한 설비를 철거해야 한다. 만약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운영사가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설비의 손상에 대해서 운영사는 변상하지 않으며, 발생한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 ④ 대관자는 대관 기간에 국악당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5조 (촬영 및 부대행사)

- ① 공연(행사)을 촬영(녹음, 녹화, 방송)할 때는 관람객의 공연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사와 사전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객석에서 촬영할 경우 해당 좌석은 사석 처리해야 한다.
- ② 운영사는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촬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때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운영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 ③ 대관자는 공연(행사)과 상관없는 부대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 ④ 대관자는 부대행사(판촉, 사인회, 리셉션 등)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운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부대시설 사용 시 추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6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 ① 공연(행사)의 내용과 상관없는 홍보물은 부착 및 설치가 불가하다.
- ② 홍보물을 게시할 경우 운영사가 지정하는 장소와 규격에 따라 게시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대관자가 직접 하고 발생하는 모든 비용 또한 대관자가 부담한다.
- ③ 대관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운영사와 관련한 사항이 삽입될 경우 운영사의 홍보방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④ 대관자는 운영사에서 홍보자료(보도자료, 포스터, 리플렛 등)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①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국악당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대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② 대관자가 주의의무 소홀로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상을 끼쳤을 때는 즉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③ 대관자는 운영사가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④ 운영사는 대관기간 중 공연(행사)과 관련하여 국악당 시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계 결함이나 국악당 또는 대관자와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되어 공연 회차가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운영사의 책임은 대관료 반환 및 부대설비 사용료 면제에 대한 사항으로 한정되며, 대관자는 입장권 교환 및 환불 등 운영사의 책임 외에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⑥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 일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자가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⑦ 대관자는 제3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운영사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운영사가 제3자로부터 청구를 당하였을 때 대관자는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⑧ 대관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대관자가 반입한 설치물 및 물품에 관한 관리 책임은 대관자에 있다. 대관 시간 이후의 야간에는 통상적인 한도 내에서 운영사가 그 책임을 지며, 다음의 경우에는 대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가. 공연장 외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 책임
 - 나. 공연장 내 설치물 및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물품의 손실·분실 등에 대한 책임

제18조 (안전관리)

- ① 대관자가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법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방염대상 물품은 행정안전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결과를 운영사(방화관리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운영사는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대관자가 국악당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 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같은 법 동조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국악당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사는 전기안전 검사를 대관자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검사료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 ⑥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운영사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 (티켓운영)

- ① 권종에 상관없이 관객이 객석 입장에 필요한 표(이하 '입장권'이라 한다.)는 국악당 좌석(306

석_휠체어 좌석 포함) 내에서 발권할 수 있다.

- ② 입장권 발행은 운영사와 사전협의하여 티켓판매대행사를 통한 전산 발권을 의무화하되,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대관자가 지고, 필요한 경우 운영사는 입장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 ③ 입장권에는 날짜, 시간, 장소, 공연명, 좌석번호, 권종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 ④ 초대 또는 홍보수단 등에 사용되어, 입장권으로 교환 가능한 표(이하 ‘교환권’이라 한다.) 발행 시 운영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 ⑤ 대관자는 공연 당일 관객이 소지한 교환권을 입장권으로 교환해줘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 관객 입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관자가 진다.
- ⑥ 공연 외의 행사(녹음, 녹화, 연습, 교육, 기타 행사) 등의 입장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운영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 ⑦ 관객 수가 좌석 수를 초과할 경우, 운영사는 관객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 ⑧ 운영사는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을 위해 다음 각호의 좌석을 유보하며, 해당 좌석은 매표할 수 없다.
B블럭 4열 1,2 / B블럭 5열 14, 15 / B블럭 10열 1,2 / C블럭 9열 1,2
- ⑨ 이 규정에 따라 발행되지 않은 입장권 및 교환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책임진다.
- ⑩ 입장권의 수표는 운영사에서 전담한다.

제20조 (사전협의 및 공연진행 협조)

- ① 대관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일 시작 최소 2주일 전에 운영사가 요청하는 스태프 회의에 응해야 하며, 이때 ‘스태프 회의 제출서류’를 제출하고, 시설이나 설비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대관자와 해당 담당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설치 방안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운영사는 시설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대관을 취소시킬 수 있다.
- ② 대관자는 운영사가 요청하는 공연에 관한 모든 사항에 응해야 한다.

제21조 (관할법원) 이 내규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운영사 소재지로 한다.

제22조 (내규위반시 책임) 이 내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관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 (내규의 효력) 이 내규는 계약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24조 (규정의 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내규의 해석에 대해서는 운영사의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25조 (기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을 준용한다.

부칙(2014.05. 8. 1)

제 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15)

제 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 1)

제 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 1)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 17)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남산국악당 대관료

1. 기본시설 대관료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구분	시간	준비대관(회당)	공연대관(회당)	기타대관(시간당)
대관료	오전 09:00~12:00	150,000	400,000	300,000
	오후 13:00~17:00	200,000	400,000	
	저녁 18:00~22:00	200,000	400,000	

※ 기본대관료 포함사항

- 공연장 시설의 냉난방
- 기본 무대, 조명, 음향설비 등 사용료가 없는 부대설비
- 출연자 분장실 및 공용시설 및 공간
- 공연장 안내 서비스
- 티켓판매, 발권, 정산 등 자체 티켓시스템(선택사항)

※ 기본대관료 미포함사항

- 무대, 음향, 조명 디자이너 및 오퍼레이터
- 매표소(티켓) 운영인력
- 부대설비사용료

※ 기타사항

- 대관료는 시간대별 준비/공연 횟수에 따라 부과한다.
- 공연 대관의 사용 시간은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각까지를 말한다.
-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철수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철수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 준비대관에 준하는 대관료를 부과하며, 이는 운영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 철야 시간대(22시~)의 준비 및 철수 대관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필요할 경우 운영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철야시간은 23:00~02:00, 02:00~05:00, 05:00~08:00으로 구분하며, 회당 기본대관료의 100분의 50을 할증한다.
- 공연 및 공연 연습 외의 녹음, 녹화, 교육, 행사 등은 기타대관료에 따른다.
-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별도로 부과된다.

2. 부대시설 대관료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공간	용도	사용료	기준시간	추가대관료
연습실	연습, 행사	200,000	대관가능시간 (09:00~22:00) 이내 1회 4시간	시간당 기본료의 25%
소리마루(체험실)	공연 및 행사	200,000		
야외마당	공연 및 행사	200,000		
전시실	공연 및 행사	200,000		

3. 기술지원

- 운영사는 공연장 시설, 부대설비의 사용관리 및 무대안전 관리 업무를 지원하며, 이 외에 모든 인력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무대, 음향, 조명 디자이너 및 오퍼레이터 등)

서울남산국악당 부대설비 사용료 및 신청서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공연명				대관일수		공연횟수			
구분	NO.	품명		단위		사용료	수량	단위	비고
음향	1	무선마이크 (핸드,벨트팩+핀마이크)		1채널	1일	20,000			건전지 사용자 부담(AA사이즈)
	2	무선마이크(벨트팩)		1채널	1일	15,000			건전지(AA사이즈), 핀마이크 사용자 부담
	3	유선마이크 (D.I.BOX포함)		1채널	1일	3,000			
	4	상하수 PDP TV 모니터		2대	1일	20,000			운영PC / 설치 및 운용 인력 사용자 부담
	5	프로젝터 10,000ansi		1대	1일	100,000			
	6	CD Player		1대	1일	10,000			
	7	음향 믹싱콘솔		1대	1일	50,000			야마하 CL5
	8	모니터스피커		1대	1일	20,000			
	9	인이어모니터(무선)		1채널	1일	20,000			건전지 사용자 부담(AA사이즈)
	10	야외이동형 장비		1식	1일	300,000			음향콘솔1, 스피커4(메인2,모니터2), CD플레이어1, 무선마이크8 기준 / 건전지 사용자 부담(AA사이즈) / 추가 장비 필요시 사용자 부담
	11	녹음	USB 메모리	1식	1회	30,000			저장매체지참 (외장하드, USB)
	12	녹화	SD 카드	1식	1회	30,000			
조명	13	조명 콘솔 (grand MA3)		1대	1일	80,000			설치 및 운용 인력 사용자 부담
	14	LED SPOT (VLZ Profile)		1대	1일	40,000			
	15	LED WASH (AURA XB)		1대	1일	40,000			
	16	LED BAR (SL BAR 660)		1대	1일	20,000			
	17	팔로우핀 (XENON 1kw)		1대	1일	20,000			
	18	포그 머신 (Antari F-4)		1대	1일	10,000			소모품(포그액 사용자 부담)
무대	19	댄스플로어		1식	1일	100,000			인력, 테이프 사용자 부담
	20	이동식 스크린		1식	1일	50,000			300인치(6000x4300)
	21	신형 라이저		1장	1일	10,000			2400x1200x200, 400, 600 가림막 포함
	22	돛자리(화문석)		1장	1일	20,000			28자x11자(8400x3300)
	23	병풍		1롤	1일	20,000			중요제례약 6폭(1폭610x2250) 한양전도 8폭(1폭510x2600) 십장생 10폭(1폭390x2100)
중계	24	TV중계(실황 및 녹화)		1식	1회	300,000			1. 외부장비반입 중계 2. 음원,네트워크,전원 등 사전조율필요
	25	인터넷, 라디오중계 (실황 및 녹화)		1식	1회	150,000			
	26	녹음 중계(실황 및 기록)		1식	1회	100,000			
	27	촬영 중계(실황 및 기록)		1식	1회	100,000			
기타	28	폐기물처리비		1개	1회	20,000			
	29	카드키		1개		30,000			카드 분실 시 개당 30,000원
	30	철수대관료 / 추가대관료		별도 계산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후 철수 시 / 연습실, 소리마루(체험실), 야외마당 등